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30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이학영·김주영·박 정
한민수·김태선·이해민
한정애·안호영·이재정
조정식·황명선·이용우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3675호)은 청문회에서 증인이 약속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증인이나 관계 기관이 보고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는 경우,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상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불출석죄(제12조), 국회모욕죄(제13조), 위증죄(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는 청문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의 장이 아니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국정감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조치를 담보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입법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회증언감정법에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증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관계정부·행정기관 등의 담당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법인 또는 기관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

능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신설되는 범죄에 대한 고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5조를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거부 등의 죄) ① 「국회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국회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요구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 조사 및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의 담당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요구는 해당 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고의무는 위원회 존속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다만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보고요구를 승계할 수 있다.

제12조의3(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기관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를 “제12조의2·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청문회 사후조치 이행 경과 보고 거부 등의 죄) ① 「국회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② 「국회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요구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 조사 및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의 담당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요구는 해당 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고의무는 위원회 존속기간 종료후에도 유효하다. 다만 위원회</u>

<u><신 설></u>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	<u>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보고 요구를 승계할 수 있다.</u> <u>제12조의3(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기관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5조(고발) ① ----- ----- --제12조의2·제13조----- ----- ----- ----- ----- -----
---	--

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